



만화인 헬프데스크

2024 상담 사례집

법률
세무·회계
노무
창업
차별·괴롭힘

만화인 헬프데스크

2024 상담 사례집

본 사례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24만화인헬프데스크’ 사업의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질문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만화인 헬프데스크

03 _____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개

2.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05 _____ 계약서 검토

20 _____ 저작권

35 _____ 계약해지

41 _____ 기타

3. 2024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

사업 소개
자문 위원 소개
상담 현황



1.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개

h[😊]lp
만화인헬프데스크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만화인 헬프데스크란?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분야 창작자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1:1 무료 상담 서비스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만화가님도

OK!



계약문제로
고민하시는
예비 만화가도

OK!



사업으로
고민하시는
만화기업, 기관도

OK!

“법률 / 세무·회계 / 노무 / 창업 / 차별·괴롭힘 분야의 전문가들이 1:1로 상담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상담 신청



상담 확정 및 전문가 지정



전문가 답변



최종 발송

방문상담 / 화상상담 / 전화상담



상담 신청



상담일 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약 확정



상담진행

상담장소 웹툰융합센터 3층 만화인 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2.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계약서 검토

h^{elp}

만화인헬프데스크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Q.

**제가 질병 등으로 몸이 아파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연재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재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해란 계약서에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확정
 하여야 하는데, 그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
 물,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질병(전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등 몸이 아픈 경우는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작가의 귀책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미리 ‘작가가 몸이 아파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작품 연재
 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작가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등 작가의 상황
 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작가님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웹툰 단행본 등이 출간되면 해당 수익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동지분에 의해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원은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웹툰 단행본이 원저작물만을 그대로 사용하여 디지털에서 책으로 발행하였다면, 이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웹툰 단행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간될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

계약서 상 ‘MG(선급금) 보전 후 분배’를 후차감
 지급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지, ‘월 MG’, ‘누적 MG’,
 ‘통합 MG’ 등의 구분 없이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요청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A.

MG라 함은 ‘Minimum Guarantee’의 약자로 작가에게 지급을 보장해주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후차감’의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의미를 매출액 중 ‘작가의 몫만’이 MG를 갚는 데 반영되는 것이 맞다면, 질의자께서 체결하신 이 사건 계약 내용의 대금 지급 중 ‘수익배분: “을”이 제휴 업체로부터 수령한 순수익의 00%에서 기지급된 MG(선급금)을 보전 후 분배’라는 부분이 있고 이 때의 00%가 상대방과 질의자 사이의 질의자께서 받는 수익배분을 이라면 위 ‘후차감’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00%가 수신인의 수익배분율이 아니라면 ‘후차감’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Q.

계약서의 배타적발행권 부분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

배타적발행권이 최초 발행일부터 3년이라는 것은 주요 계약 내용란의 ‘원고의 인도’와 ‘총 화수’ 내지 ‘예상 총 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1화씩 보내주기로 되어 있고, 총 예상 화수가 120화라면, 1년이 48주이므로 1년 동안 48화를 그리기에 완결만 하더라도 첫 시작일로부터 3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첫 시작일이 최초 발행일이라면 그때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창작자가 제작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배타적발행권 설정 기한이 종료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때 또다시 계약을 수정하거나 배타적발행권 부분만을 재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협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합의’로 바꾸는 것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A.

‘합의’는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일치를 말하므로 이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라는 조항만으로 곧 독소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자동 갱신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자동 갱신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들었는데 ‘종료’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자동 갱신이라 하여 반드시 독소조항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갱신이 유리하다면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하므로 자동갱신조항으로 인하여 절의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금액을 명시하는 등 더 자세하게 표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표기가 일반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배상이라 함은 국어적 의미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남이 입은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 불문하고 계약 위반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위약벌)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크고 작음을 문제 삼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통일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약정(위약금, 손해 배상액의 예정)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약정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질의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표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Q.

업무 상 저작물로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은 작가인 저한테는 저작권이 없다는 말인가요?



A.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귀하에게 저작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아래 설명하는 모든 권리)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상의 저작물이 그러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등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 업무의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과 관련해 특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이 없는 경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이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참조).

필요하다면 기업과 협상하여 공동저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에서, 기타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의 책임이라는 게 너무 불분명해서 상대방측에서 작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작가 책임이 될 수도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책임 있는 사유'라는 문구는 민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기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Q.

**‘계약기간 종료 00일 전에 일방이 계약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 할 경우 연장한다’로 변경
하는 것이 작가 입장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종료된다’는 것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연장된다’
보다 작가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 계약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MG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A.

매출을 내지 못했다고 작가님이 MG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작품 연재에 대한 매출과는 관계없이 작가님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Q.

계약을 제안받았는데 작품의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금액을 더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당 조항은 저작권 전체를 기업에 넘기는 규정으로 그 금액은 작가님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작품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재대가 + 저작권 양도대가의 합산액으로서 충분한 대가인지 고민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배타적발행권이 무엇이며,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을 발행(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또는 복제·전송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설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정의됩니다. 기존의 출판권(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과 별도로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한 것은 발행(복제·배포) 외에도 복제·전송할 권리를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 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건 계약서 제2조 정의 규정 제1항 3호와 4호, 제3조 권리의 설정 제2항과 제3항, 제5조 배타적 권리 규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설정기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서는 존속기간에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맨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는 특약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사건으로 그 유효성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우선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3년(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제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의 배타적 권리 설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정변경으로 인해 수익 분배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경우 그 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Q.

배타적발행권의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A.

저작권법 제59조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의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의 명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만일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을 3년보다 더 단축하고자 한다면 그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저작권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Q.

수년 간 간행물에 연재한 만화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e-북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인 저와 상의 없이 e-북으로 제작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판매 수익이 생겼을 경우 작가가 판매 수익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저작물 출판권 설정 및 전송 허락 계약서 작성 시 인쇄 간행물에 연재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작가님의 협의나 허락 없이 e-북으로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공모전 당선 후 계약서를 받았는데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약서 초안을 보낼 때,
 회사에서 수정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공모전 공고 당시 저작권의 회사 귀속에 대한 안내가 있었거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저작권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저의 작품이 저작권 등록이 된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업에서 한 달 전에 상표 등록을 한 정황이 있어 특허청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미 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일단 저작권등록이 된 작품은 저작권 보호가 됩니다.

보내주신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의 경우 광고업 및 광고대행 그와 관련한 산업을 하는 법인명으로 광고업과 광고이외의 레이아웃서비스업, 컴퓨터대여업 등에 사용되는 상표권입니다. 즉 이 상표권은 만화 일당백과는 별개의 상표권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아래의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 교부 ·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즉 작가님께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동일영역(광고업, 광고대행업 등)이나 유사영역 등에서 사용할 것이 아닌 한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동일함에도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다면,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작가님의 상표 역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Q.

외국어 번역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 작가가 창작한 만화가 번역이 된다면 그 번역된 만화는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번역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참고자료 1 참조). 만화 저작물의 번역된 부분만이 번역저작물로 원저작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텍스트 이외의 부분에 미치는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번역된 만화에 대하여 번역된 텍스트 부분을 제외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제 웹툰 속에 영화 포스터와 DVD가 가득한 방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따로 부각되는 장면은 없고 배경일 뿐이긴 합니다. 여기에 실존하는 영화 포스터/DVD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걸까요? 그대로 사용이 안된다면 필터를 입혀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A.

말씀하신 경우는 아래 조항에 의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저작권 침해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말씀하신 경우와는 달라 보이나 확인을 위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위 이미지와 같은 장면에서 특정 포스터나 DVD 이미지를 부각
- 특정 이미지를 감상 가능 할 정도로 클로즈업
-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특정 포스터나 DVD 이미지를 오래 또는 도드라지게 보여줌

위에 예를 든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고,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경으로 보여주는 정도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특정 포스터나 DVD 이미지가 도드라지는 장면이 있다면, 필터를 입혀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Q.

**웹소설 원작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원작자와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용허락’ 형태이면 글에 대한 저작권 수입은 가질 수 없고, 제 3자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을 때도 침해방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양도’를 받으면 독점적인 저작권자가 되므로 글에 대한 저작료 수취, 저작권침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 양도 계약 혹은 이용허락을 명시하여 확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입니다.

Q.

타 저작물에 전개방식이나 아이템을 일부 차용한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장르와 시대-장소적인 배경, 전개방식 등 작품의 개념·방식·해법·창작의 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구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여도 기술적인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림이 원작이 있는 작품의 일러스트를 그려
NFT 작품 판매와 전시 할 경우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오마주, 모티브, 트레이싱,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원작을 일러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원작)을 오마주, 모티브, 트레이싱, 패러디 등으로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허락)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작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라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일러스트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작이 국내 작품인지, 해외 작품인지 확인하시어,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저작권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시어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NFT 작품은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리스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Q.

공모전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공모전 당선 후 노출됐을 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얼굴 노출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초상권에 해당되며, 초상권은 초상권자의 식별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사용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2254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서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원고의 모습이 노출된 작품에 관하여, 법원은 공모전 주최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출품자에게 위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Q.

작품 속 정치적 발언과 폭력성(욕설, 피, 폭행 장면 등)의 범위와 수위 묘사 시 주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A.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청소년보호법 상의 제한,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상의 규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감수성도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창작의 시점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이 게재된 이후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웹툰자율규제 위원회는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연령등급조정, 표현주의요망 등 조치를 권고합니다.

Q.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허락을 구하는 방법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 시 가능한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께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찾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 검색을 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짧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연재작품에 노래가사를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이용허락 신청 후 허락을 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무상 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 음원의 경우, 가사를 번역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허락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관리하는 신탁 업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Q.

**필명을 새로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 필명을 다른 작가나 사업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새롭게 시작하는 필명이라면, 아직 유명한 이름(네임드)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점이 중요한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는 분야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한 두 번 미팅을 했던 기업이 있는데 작품 검토용으로 원고를 2화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외부에 자사 작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계약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기업에게 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체결을 미끼로 작가에게 접근하여 작업물을 받은 후 자신의 작업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관련하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혹은 대면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면 이메일, 메신저 등 의사표시 내용과 발송일시 등이 명확하게 남을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해두십시오.

이외에도 저작권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도 한 방법입니다.

2.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계약해지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Q.

웹툰 제작사와 작품제작 계약 후 제작 시작 시점에 대해 미루다
오랜시간 지체되었는데, 그간 원고료 일부를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사는 작가의 계약해지 요청을 사유로 선지급 된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데, 이 경우에 반환하지 않고 제작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반환 없이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제작지연에 대한 스튜디오 측의 책임을 물어 작가님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작사에서 제작시점을 계속적으로 연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 작
가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기수령하신 원고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Q.

웹툰 제작사 계약 후 연재확정이 된 상태에서 기업에서 상업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 작품을 다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계약 해지를 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A.

회사(을)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갑이 동의하는 경우 “해지계약”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갑은 해지동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들(회사에 위약금을 요구, 이 작품을 다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 요구에 동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셔야 하고(금전이나 서비스 요구 등 갑이 결정할 내용임), 그 정한 사항을 합의서 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Q.

**상대방 날인이 없는 전자 계약해지 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A.

**계약해지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고 그 발신자와 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상대방 날인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Q.

**웹툰 제작사의 수정-보완이 잦아 건강 문제,
담당자님과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위 질의하신 사유들은 연재계약서 이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사유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측의 과도한 수정요구가 확인된다면 작가님께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지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일 합의해지 불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병의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작가님의 건강상태가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소명하거나 회사측의 수정보완요구가 계약상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넘어선 과도한 것이었음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지급하는 원고료(MG)의 수준과 요구하는 수정내용과 횟수가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다시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체작가를 섭외하기 위한 상당한 기한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선작업되어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대략 1개월 이상은 선작업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 그 효력발생 시기는 1개월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정산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공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가 정산명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전제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서 상의 의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으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해제 전제 조건으로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일정 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메일 발송하여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면 해지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수익정산표 미공유에 대하여 날짜를 정하여 통지한 점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계약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도 같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화인 헬프데스크 FAQ 기타

h[😊]lp
만화인헬프데스크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Q.

무빙툰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등급분류 대상인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알고 싶습니다.

**A.**

무빙툰은 이미지가 움직이며 소리도 나는 인터넷 만화로 정의되며, 따라서 영화나 비디오물과 개념상 차이가 있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비디오물”이라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전자출판물”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르를 달리하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고, 관련 법률에서도 각각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무빙툰은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Q.

제작사로 작가와 웹툰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데, 작가의 사정으로 작품제작이 무산되어 제작비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행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작가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필요하며, 작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 기획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작가가 기획사 등으로부터 수령 할 정산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 외에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창작지원 사업 시 받은 정부 지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은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귀속,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홈택스에서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 하시거나 혼자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

- 일반적으로 예술인의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실 것이지만, 계약종료의 경우 통상 '문화예술용역계약 종료 확인서'를 업체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오리지널 작품을 연재하는 메인작가로 어시스턴트와 계약하는 경우 외주 용역 계약서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어시로 스텝롤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색작가로 작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어시스턴트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A.**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권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어시스턴트 작가와는 도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며, 만일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와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나누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계약서를 체결합니다.

Q.

**메인작가로서 어시스턴트와 고용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만 들어주면 되는지요?**



A.

어시스턴트 작가와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시스턴트 작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웹툰 프리랜서로 일하여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각종 입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계약서 전문을 회사의 허락 없이 재단에 제출해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 불이익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A.**

2019년 개정된 만화관련 표준계약의 해설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계약서의 사전 검토나 공공기관의 연구목적으로 계약 내용이 제공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에의 계약서 제출은 ‘예술인 활동 증명 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술인 활동 증명’을 통해 재단에서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복지사업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단에의 제출이 완전히 ‘공공기관의 연구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입장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홈페이지에서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 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라고 하였을 뿐 전문 제출이 의무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민감정보 기밀사항 등은 블라인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재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필수 부분이 아니나 기밀사항 등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수신인이 블라인드 처리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작품 고료 정산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식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보내주신 회사와 작가님 간의 계약서에는 정산에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정산자료 또는 정산 내역의 제공에 관한 조항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작가님께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웹툰 계약은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작가님의 권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민법상 위임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요구가 있으면 위임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투명하고 성실한 수익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정산자료의 제공은 수익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정산금 지급의무와 별도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Q.

프리랜서로 외주 계약을 맺은 후 회사가 임금을 미뤄
계약을 해지하였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미지급 대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미수금 사건에 있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무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변호사 매칭)

▶ 지원 내용 : 미수금 소장작성, 미수금 청구(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신청 지원제도(무료)
아울러, 일반적인 밀린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안내
드리니,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1) 내용증명

-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법적 조치에 대한 예고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을 통해 발송 가능합니다.

(2) 소액소송(민사소송)

- 소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체불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처리 기한이 기본 25일로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웹툰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밝힐 수 있는 절차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근로계약과 무엇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A.**

소위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자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도급 또는 용역 계약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정한 계약으로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3.3%) 신고를 하는 반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간이세액표 적용) 신고를 해야 하고, 만화 창작 등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어서 고용이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폭력성-선정성 관련하여 웹툰의 등급분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현재 웹툰의 이용 연령 등급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제시하는 '웹툰 연령 등급 자가진단표'를 바탕으로 작가와 웹툰 플랫폼이 협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차적으로, '폭력성', '선정성'과 '이용 연령 등급'에 대한 최종 판단을 작가와 플랫폼이 하게 되는 셈이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험의 8가지 기준에 따라 전체 연령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로 구분됩니다. 다만 자가진단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웹툰 연령등급 자가진단표[<https://acw.or.kr/rank/?pidx=rank4>]
웹툰 플랫폼은 대체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제시하는 '웹툰 연령 등급 자가진단표'를 바탕으로 내부 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개별 플랫폼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2024 사업소개
자문위원 소개
상담 현황



당신의 **리스크**
헬프데스크로 스마일

● 사업 소개

사업명

2024 만화인 헬프데스크

사업 목적

- 만화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만화콘텐츠츠 산업의 성장 도모
- 공정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만화인 권익보호 강화

운영 개요

상담분야 : 법률, 노무, 회계·세무, 창업, 차별·괴롭힘 등
상담대상 : 만화가, 예비 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만화기관 및 협단체 등

| 온라인 상담 |

운영일시 평일 상시 운영 상담 신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



상담 신청



상담 확정 및 전문가 지정



전문가 답변



최종 발송

| 방문상담 / 화상상담 / 전화상담 |

상담장소 웹툰융합센터 3층 만화인 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상담 신청



상담일 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약 확정



상담진행

● 자문위원 소개

분야별 자문위원

노무

김성중 노무사
김해원 노무사

법률

김필성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안순섭 변호사
김한가희 변호사
이관용 변리사
이지훈 변호사(1)
우원상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우광제 변리사
김소이 변호사
최민령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서한샘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2)
권성룡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
서유경 변호사
배윤근 변호사
송재호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창업

신기종 컨설턴트
유진혁 대표이사
정재환 차장
장영구 대표이사

세무 회계

안영현 회계사
윤장우 세무사
임영은 회계사

차별 괴롭힘

김민주 대표이사



● 상담현황

분야별 상담현황

법률	계약서 검토	총 112건	44.8%
	계약해지	총 40건	16.0%
	기타	총 44건	17.6%
저작권		총 26건	10.4%
회계·세무		총 13건	5.2%
노무		총 10건	4.0%
창업		총 5건	2.0%

2024년 총 상담

법률 196건, 저작권 26건, 세무·회계 13건,
노무 10건, 창업 5건 총 250건



만화인 헬프데스크

2024 상담 사례집

총괄 | 백종훈

기획 | 전병진, 최하전

진행 | 유혜원

감수 | 최민령

발행일 | 2025년 2월 14일

디자인 | 주식회사 라온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